

직업병 관리 및 근로자 건강진단

CONTENTS

1. 직업병 관리 및 사업장 건강증진

- 직업병 관리
- 사업장 건강증진
-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

2. 근로자 건강진단

-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 건강진단의 실시
- 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part 1. 직업병 관리 및 사업장 건강증진

1. 직업병 관리

1) 직업병이란

가. 용어 정의

- 직업병 :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 직업적 노출과 특정 질병 간에 명확하거나 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단일 원인에 의해 발병
- 직업 관련성 질환 : 직업에 의해 악화되거나 직업과 관련해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
- 작업환경과 업무 수행상의 요인들이 다른 위험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인 병인으로 기여해 다수의 원인에 의해서 발병

2) 우리나라 업무상의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가. 제37조 제1항

-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7조 제1항 제2호

- 업무상 질병
- 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㉕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㉖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㉗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제37조 제2항

-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라.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직업병 특성

가. 직업병의 특성

-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 어려움
-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
-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킴
- 임상 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력을 소홀히 여김
-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보상과 관련되어 있음
- 심한 질환은 산재보상 혜택이 크지만, 경미한 질환은 산재보험 실익이 없음

4) 직업병 발생 원인

가. 직접 원인

① 작업환경

- 대기조건의 변화, 진동 현상, 방사선 등 물리적 환경
- 잠함병, 소음성 난청, 진동병, 산소 결핍증, 광선에 의한 안장해 발생

②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

- 가스, 액체, 분진 형태의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 각종 공업중독, 진폐증, 직업성 피부질환 발생

③ 부적당한 작업 조건

- 격렬한 운동, 고속도 작업 등
- 근골격계 질환 발생

나. 간접원인

① 물리적 원인

- 온도, 복사열, 소음과 진동, 유해 광선, 작업 자세

- 열사병, 동상, 소음성 난청, 진동 신경염, 백내장, 각종 근골격계 질환

② 화학적 원인

- 중금속, 유기용제, 가스 등 화학적 유해 물질, 분진
- 중금속 중독 : 납, 수은, 카드뮴 등
- 진폐증 : 탄관 부폐증, 규폐증 등

③ 생물학적 원인

- 세균 · 곰팡이 ·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요인
- B형 간염 · 쯤쯤가무시병 등 실내 공기 오염에 의한 기관지 질환

④ 정신적 요인

- 스트레스, 과로

5) 직업병의 종류

가. 직업병의 종류

- 근골격계 질환 :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회전근개건염, 외상과염(테니스엘보) 등
- 소화기계 질환 : 디메틸포름아미드,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의한 독성간염 등
- 피부질환 : 알레르기 및 자극 접촉 피부염, 광선피부염, 건선의 악화 등
- 호흡기계 질환 : 진폐증, 천식, 폐암, 급성 또는 만성 기관지염 등
- 감염 질환 :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렙토스피라 등
- 면역계 질환 : 전신성 경화증,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악화
- 정신 질환 : 우울증, 외상 후 증후군, 인격장애, 공황장애
- 순환기계 질환 : 부정맥,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
- 요로생식계 질환 : 급성독성신염, 만성신부전, 방광암, 고환암, 신장암 등
- 신경계 질환 : 중추신경계 질환, 파킨슨 증후군, 말초신경염 등
- 조혈관 질환 : 골수기능억제(백혈구·혈소판·적혈구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등
- 직업성 암 : 폐암, 악성 중피종, 비강암, 백혈병 등

6) 직업병의 진단

가. 직업력 조사

- 현 작업 : 근무하고 있는 직업, 근무 기간 등 조사
- 직업력 : 과거의 정규직업, 임시직업 및 부업을 연대순으로 조사
- 군경력 : 특히 유해 요인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부서 근무 경력 조사
- 비직업적 노출 : 흡연 · 음주력을 상세히 조사
- 거주지역과 취미 생활 조사

나. 임상증상과 징후

- 통상적으로 대부분 증상이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가 힘든 비특이적 증상들이 나타남

다. 유해 요인 노출 내용과 정도에 대한 평가

① 노출 기록

- 작업공정에서 사용되는 유해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업공정에 관한 기록이 필요
- 안전 보건 관련 서류, 공급자 정보, 대기·하수 배출 등 환경폐기물에 관한 자료, 작업환경 모니터링 자료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됨

②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기록을 검토하거나 필요에 따라 직접 측정

③ 생물학적 모니터링

- 호흡기 외 다른 경로의 노출에 의한 영향을 함께 평가할 수 있음

④ 노출의 추정

- 과거 모니터링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작업 내용 분석과 과거 직력을 자세히 조사
- 동료 근로자 면담을 통해 노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⑤ 검사실 검사 및 기타 정밀검사

- 임상병리검사, 특별 생화학적 검사, 기타 정밀검사를 하여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함

⑥ 동료 근로자들의 역학적 자료

- 동일한 작업장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동일한 임상증상이나 질병 발생 양태는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 된 질병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음

7) 직업병 예방 대책

가. 발생원에 대한 대책

① 공정 재설계

- 유해 물질 배출이 방지되도록 설계되거나 소음·진동이 최소화되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계 구입

- 유해 물질 배출이 방지되도록 설계되거나 소음·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계 구입
 - 기존 기계에 안전장치 부착
 - 생산공정에서 유해 과정 제거 등
- ② 대치
- 유해한 물질을 유해하지 않거나 덜 유해한 물질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방법
- ③ 격리 또는 밀폐
- 유해한 작업공정을 격리 또는 폐함으로써 노출 근로자를 최소화

나. 전달 과정에 대한 대책

- ① 국소 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
- 국소 배기장치
 - 실험실, 납땀 작업 대 등에 설치하는 고정식과 용접이나 분무 작업 시 설치되는 이동식이 있으며 유해 물질 관리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
 - 전체 환기
 - 독성이 비교적 약한 유해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희석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 ② 습식법
- 제분, 굴착, 분쇄 등 분진이 많이 발생 되는 작업에서 사용
- ③ 차폐물
- 소음, 방사선, 고열의 향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벽, 보호판 등을 설치
- ④ 정리·정돈·청결
- 옆질러진 물질의 완전한 청소, 청결 유지 또한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

다. 근로자에 대한 대책

- ①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는 공학적인 방법과 관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나 이러한 조치들도 공기 중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때에만 작업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 규격품 사용, 적절한 사용법 지도, 적합한 보호구 공급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
 - 개인보호구는 공학적인 방법과 관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나, 이러한 조치들도 공기 중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 할 때에만 작업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
- ② 행정적 조치

- 유해 요인이나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을 관리 재배치하는 것이 목적
 - 특정 유해 요인에 감수성이 높은 근로자를 선별해 재배치하거나, 유해성이 큰 작업장에서 교대 근무 등의 행정적 관리를 의미
 - 직업병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님
- ③ 의학적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 진단, 수시건강 진단 등을 실시하여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2차 예방법
- ④ 보건교육
-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종류나 발생장소 그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실시함으로써 직업병 예방을 위한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음

2. 사업장 건강증진

1) 건강증진

가. 건강증진의 의미

- 건강향상을 위해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건강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
-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의학적, 행동과학적, 보건 교육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
-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건강에 해를 주는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저항력을 함양하는 것

나. 건강증진의 목표

- ① 소극적 목표
- 모든 근로자 개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
- ② 궁극적 목표
- 전체 의료비용 감소 및 생산성 향상

2)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배경

가.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배경

- 사업장 근로자의 중년화, 고령화, 급속한 기술혁신 등의 사회경제환경 변화가 근로자 건강 확보에 큰 영향
- 생활 습관 및 식생활 변화로 운동기능,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근·골격 장애, 감각 기능 장애 등 작업 관련 질병 및 고혈압성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병 유병률이

높아짐

- 공장 사무화, 사무 자동화 등 작업 형태 변화는 근로자 정신건강문제 등 야기
- 건강의 유지뿐만 아니라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에도 근로자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3)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

가.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

① 직접적 효과

- 건강측정 결과의 개선
- 생활 습관의 개선
- 운동 실시율 상승
- 일반 및 업무상 질병 예방

② 최종적 효과

- 근로자의 노동 적응력 및 만족도 향상
- 사기 진작, 책임감 향상, 스트레스 해소
- 결근 일수의 감소로 인한 100% 출근율 기대
- 노동조합과의 유대 강화 및 노사관계 개선
-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전체 의료비용 감소
- 생산성 향상

3.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

1)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추진팀 구성

가. 건강증진팀의 구성

- 사업장 내 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및 사업장 실정에 알맞은 전문 인력을 건강증진팀으로 구성 및 운영, 건강증진계획 구체화
- 사업장 내의 건강증진사업 체제의 정비
- 건강증진사업 조치 실시
- 건강증진사업의 필요 인력 확보 및 시설, 설비의 정비
- 근로자의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지원

나. 건강증진팀의 구성

- 의료담당 : 사업장 의사, 위촉된 산업보건이가 생활 상황 조사, 의학적 검사, 운

동 기능검사 등을 포함하는 건강측정 결과를 토대로 의학적 지도 및 전문인력 지도

- 프로그램 담당

- 운동 지도 담당 : 건강측정 결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 운동프로그램 작성, 지도

- 보건지도 담당 :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 보건지도 수행

- 영양 지도 담당 : 건강측정 결과 따라 식습관 평가, 개선지도, 사업장 영양사 담당

- 심리 상담지도 담당 : 긴장 완화 및 스트레스 예방 등 정신보건관리 지도 역할 담당

- 체력 측정 담당 : 근로자 체력 향상과 운동능력 향상 목적으로 각 근로자의 근력, 근지구력 등 측정, 그 결과 값 지도

- 건강증진 사업 지도자 :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각 부분의 건강증진 사업 실천 지도, 지원 행하는 역할 나누어 담당

2)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가. 건강증진 사업 필요성 평가 (Needs Assesment)

- 사업대상 선정 위해 작업환경 위험 요인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등 기초 자료로 정보 수집, 우선순위 정함

- 사업장 정책의 동향

- 사내 계층별 동향 (경영 간부,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 스텝, 노동조합 근로자 등)

- 건강측정결과 (체력 등)

- 건강진단 결과

- 사업장 점검 결과 (작업환경,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 건강상담 결과 (상담실 이용 실적 등)

- 근·골격계장애, 작업 관련 질병 등에 대한 각종 통계 자료 (재해통계, 질병통계, 사망통계)

- 건강증진운동 위한 환경정비 상황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 소요인력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건강증진 운동 지도자 등)

- 건강증진 운동 위한 예산 (기업, 의료보험조합, 정부지원 등)

- 근로자들과 면담, 회의 개최, 설문조사 등 실시하여 수집된 정보와 작성된 우

선순위 토대로 정보 분석, 사업 수행 계획 작성

나. 사업계획 작성 (Planning)

①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형의 선정

- 의식화 프로그램 : 주제에 대한 관심 고조시키는 과정
- 생활양식의 면화 프로그램 : 건강증진을 위해 직접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과정
- 지지적 환경조성 프로그램 : 긍정적 실천 의지 강화, 건강한 생활양식지지 과정

② 세부 실행계획의 작성 시 고려 사항

- 누가 사업의 대상인가?
- 성취되어질 목표는 무엇인가?
- 주변 자원들이 무엇인가?
-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가?
- 선택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다. 사업 수행 (Implementation)

- 설정된 목표 검토
- 사업 진행 팀원들을 위한 계획된 업무 검토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들을 팀원에게 위임
- 사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작성
- 사업을 계획에 따라 수행
-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

라. 사업 평가 (Evaluation)

- 사업을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행 결과를 지속적, 개별적,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의 영향력 평가
- 행동의 변화(Behavior)
- 지지도(Adherence)
- 건강상태(Health)
- 체력상태(Fitness)
- 지식(Knowledge)

- 의식(Attitudes)

3) 건강위험요인 평가

가. 건강위험평가의 정의

-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과 특성을 사망률과 역학적 자료와 비교하는 건강증진 도구
- 위험 측정과 행동 교정의 유익이 개인에게 제시되어 생활습관 바꾸고 건강 증진 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실시

나. 건강 문제 평가 시 유의 사항

- 사업장 건강증진이 근로자의 생활 습관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됨
- 작업환경의 개선이나 사업주의 인식은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리는 것으로는 효과적인 결과 기대할 수 없음

다. 건강위험요인 평가 시 고려사항

- 생활양식과 기본체력
- 건강진단을 통한 평가
- 작업상의 위험요인

4) 분야별 건강지도

가. 보건 담당

- 건강측정 결과, 작업 형태, 생활 습관 등에서 오는 건강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근로 생활 지도 및 교육
 - 직업성 질병 예방 교육
 - 업무상 질병 예방 교육
 - 보호구 착용 지도
 - 작업 형태 지도

나. 운동 담당

- 전신 근육 이완시켜 작업 중 재해 예방, 심신 맑게 피로회복, 기분 전환 위한 운동 지도 및 교육
- 근로자 체력 강화 운동

- 체력향상 지도는 건강측정 결과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성별, 연령, 위험요소, 운동 경험, 습관 등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 작성
- 근로자 개개인이 자주적, 자발적, 효과적으로 운동 실시하도록 지도
- 출근 전이나 작업 시작 전 실시
- 개인의 체력 및 운동능력에 맞는 강도로 실시,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임
- 직장체조
 - 각각의 사정에 알맞은 체조를 선택, 또는 변형하여 실시
 -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유쾌히 할 수 있도록 배경음악 사용
 - 직장체조는 간단하게(Simple), 짧게(Short), 효과적으로(Sufficiency)하도록 3S 조건 만족
 - 작업 전 작업 의욕 높이고 전신 근육 이완 위한 준비 체조 실시
 - 작업 중 피로 해소와 스트레스해소 위한 체조 실시
 - 작업 후 심신조정 위한 체조 실시

다. 영양 담당

- 과식, 식염, 알코올 등 과잉섭취 등 식생활 문제 있는 근로자에게 식생활 평가, 개선 실천 지도 및 교육
- 식사요법 지도
- 영양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영양 지도
- 식습관 개선 및 평가
- 저염식 지도
- 절주 및 금연 운동

라. 심리상담 지도자

- 건강측정 결과 등 따라 정신건강 상담지도 필요 판단, 근로자 희망 시 스트레스 해소 및 이완 요법 지도 및 교육
- 스트레스에 대한 감지 지원
- 스트레스 해소기법 지도
- 이완 요법 지도
- 즐거운 직장 조성

part 2. 근로자 건강진단

1.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1)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가. 건강진단

- 일반인 대상
-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 질병의 발견
- 건강진단을 통한 적절한 예방 조치나 조기 치료
- 의학적 검사

나. 건강진단의 특성

- 병·의원 등에서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진단과 다름
- 이상소견이 발견된 사람은 대부분 환자가 아니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음
- 적절한 예방 조치와 조기 치료 가능

다. 근로자 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 대상
- 적절한 예방 조치나 조기 치료만으로도 건강 회복 가능
- 일반질병, 직업병
-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조기 발견
- 의학적 선별검사

라. 질병 예방 3단계

① 1차 예방

- 생활 습관 관리, 작업관리, 근로자 건강센터

② 2차 예방

- 근로자 건강진단 → 조기 진단과 예상되는 위험 미리 감소
- 위험 요인 감지 및 제거

③ 3차 예방

- 사후관리, 보상 및 재활
- 작업 복귀

마. 건강진단의 필요성

-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 증가
-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인 시대
- 대부분의 질병
 - 일찍 발견해 적절한 예방과 간단한 치료 건강 회복 가능•질병 방지하면 쉽지 않은 치료 상당한 비용과 노력 소요
 -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
 - 인적·경제적 손실
- 개인적 요인이나 다양한 병원체에 의한 질병 발병 가능
 - 연령, 유전, 체질
 -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나쁜 식생활 등
- 산업 현장의 근로자는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질병 추가 발병 할 가능성
 - 작업환경 중 다양한 유해 요인
- 직업성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대한 개발 지체
 - 새로 발견된 질병이나 질환들
 - 한번 발생하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후유증
 - 일반 질병이나 직업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중요

2) 제도의 목적 및 변화

가. 검진의 발전

- 14C 유럽, 19C 미국의 이민자 방역
- 1940년 집단 간접 방사선 촬영술 일반화로 검진 예방 효과 입증
- 1968년 WHO 질병에 대한 검진 원칙 및 실행
- 1998년 영국 국가검진위원회(UKNSC) : 검진을 통한 발견, 확진, 치료 연계

나. 건강진단 의의 확장

구분	이전의 견해		최근 견해
의의	질병 조기 발견	→	질병 예방 및 관리
목표	질환으로 이환되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발견		+ 건강위험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발견 관리
주요 대상 질환	감염성 질환 및 암		+ 만성질환 포함
전달 체계	검진기관 기반 검진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기반 검진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결과 상담 및 의뢰		+ 질병 예방 교육 및 질병관리

다. 우리나라 근로자 건강진단

- 1953년 시작(16인 이상 사업장 대상)
- 1972년 이후 유해 요인 노출 유무에 따라 분리(일반/특수 건강진단)
- 1976년 5인 이상 사업장 → 2002년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라. 근로자 건강진단제도의 변화

시기별 상황	개정 방향	대상	주요 개정
'50-60년대 (건강검진 필요성 계몽)	감염질환 중독질환	'56(50인 이상) '58(30인 이상) '64(16인 이상)	'63 노동청
'70-90년대 (집단 중독 다수 발생과 검진 제도 정교화)	검진 전문성 확보	'72 일반, 특수 구분 '76(5인 이상)	'81 노동부 승격, 산안법 제정 '82 특기협 '92-96 정도 관리 시작 '95 일반건강진단 보험공단으로 '97 특검제도개선위원회 '99 배치 전, 수시검진 도입
'00년대~ 현재 (중검 확산과 검진시장왜곡)	특검 항목 증가, 검진 항목 정교화	'02 5인 미만 전 산업으로 확대	'02 5인 미만 전 산업으로 확대 '05 유해인자 69종 추가 '07 표적 장기별 검사항목개념 '13 야간작업근로자 검진

3)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가. 종류 및 종류별 목적

- ① 일반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유지, 주기적인 업무 적합성 평가
- ②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해당 노출 업무의 주기적 적합성 평가
- ③ 배치 전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업무 신규 배치 시 기초 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 적합성 평가
- ④ 수시건강진단
 - 직업성 천식, 피부질환을 의심케 하는 증상 또는 소견을 호소하는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 상태 확인 및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실시
- ⑤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의 집단 발생 예방, 직업병 발생부서의 근로자 긴급 건강보호 및 유지

나. 종류별 시기와 대상자

종류	시기	대상자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 대상업무 배치 예정자
특수 건강진단	• 기본주기 설정 및 조건에 따른 단축	• 대상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작업전환자
수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 작업관련 증상 호소 시	•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애 증상 호소자
임시 건강진단	•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 시 등	• 동일 부서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 비 사무직 : 1년 1회 • 사무직 : 2년 1회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의 실시

1) 건강진단의 방법

가. 사업주의 의무

- 건강 진단을 실시 할 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 근로자 대표 참석

나. 근로자의 의무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사업주 지정 건강진단기관 또는 그 외의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후 서류 제출

다. 목표 질환과 검사 도구

- 일반건강진단
 -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전 혈구, 간 기능, 소변, 결핵, A형 간염, 방사선 촬영
- 특수건강진단
 - 소음성 난청, 만성 폐질환, 화학물질 중독 등

2) 일반 건강진단

가. 목적

- 일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

나. 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판매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
- 그 외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다. 일반건강진단 검사 항목

- 과거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타각 증상
- 시진·촉진·청진 및 문진·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 검사
- 체중·시력 및 청력·흉부 방사선 촬영·AST(SGOT) 및 ALT(SGPT), γ -GTP(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라. 실시 방법

- 일반 건강진단 후 결과로 질병 확진이 곤란한 경우 2차 건강진단 실시
- 일반 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다른 건강진단을 한 경우 생략 가능

마. 일반건강진단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 항공 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검진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3) 특수 건강진단

가. 목적

-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 조기 발견
-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
-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유지, 보호

나. 대상 및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 변경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하지 않는 사람
-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 필요

다. 검사 항목별 대상

- 1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모두 실시
- 2차: 1차 진단 결과 질병이 의심되거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배치 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배치예정 업무 적합성 평가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에 실시

마. 특수건강진단 인정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

-방사선만 해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 광물성 분진만 해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 방사선만 해당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하는 유해 인자만 해당

4) 수시 건강진단

가. 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급성으로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생한 경우
- 작업 관련성 질병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나. 항목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특수 건강 진단 항목에 준함

-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별도로 규정

다. 수시 건강진단 실시 절차

① 작업 관련성이 의심되는 표적 장기 관련 증상 및 의학적 소견

- 이를 접수한 보건관리자(또는 산업보건역)
- 작업 관련성 판단
- 임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실시를 건의
- 해당 근로자 · 근로자 대표, 명예 감독관
- 사업주에게 요청

라. 수시 건강진단 제외 경우

- 사업주가 직전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 한 후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에게 자문
-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 결과서를 받은 경우

마. 작업 관련성 판단 지침

-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
- 업무 배치 전 증상여부
- 작업을 쉴 때 증상이 완화되는지 여부
- 증상 발현 전 과음이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바. 수시 건강진단 실시 유의사항

- 건의 · 자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 자문을 의뢰받았을 때
- 특수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담 후 수시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함

5) 임시 건강진단

가. 목적

- 같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때 근로자의 건강 보호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등의 중독 여부, 질병 여부를 검사하고 원인 확인

나. 항목

-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

다. 진단실시 경우

- 같은 부서의 근로자들에게서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 발현
-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건강진단 검사 절차

가.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 과거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직업,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파악
-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력(노출수준, 노출 기간 및 노출 형태) 파악

나. 과거병력 조사

- 과거에 앓았던 질병력과 직업력 파악하여 관련성 조사
 -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력 파악
- 업무 적합성 평가 및 배치 적합성 평가 가능

다. 자각 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

라. 임상 진찰

- 해당 유해인자의 주요 표적 장기에 대한 진찰
- 시진·촉진·타진·청진 등
- 의사가 직접 눈이나 손으로 또는 간단한 기구로 진찰
- 방법
- 자각 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진찰
- 주요 표적 장기에 대한 진찰
- 시기
- 건강진단 당일

마. 임상검사

- 1차 항목 검사: 해당 유해 업무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 검사 대상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검사 항목
- 2차 항목 검사: 노출 정도와 과거병력 등에 근거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실시

- 1차 검사 항목을 검사할 때 2차 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 추가 실시

바. 생물학적 노출 지표 검사

- 유기화학물 또는 금속류가 인체 내에 유입된 후 생물학적 노출물질 분석

3. 건강진단결과 평가 및 사후 조치

1) 건강진단 결과 평가

가.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 시 결과에 대해 설명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금지

나. 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 보고 의무

- 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
-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결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통보

다.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 진단 결과에 대한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판단하는 판정 내용
- 건강 관리 구분,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사후관리 조치 등

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 구분 판정	이상소견없음 건강자(A)	이상소견 있음 요관찰자(C1, C2, CN), 유소견자(D1, D2, DN)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현재 조건 하에서 현재 업무 가능	일정조건 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일정기간 현재업무 불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불가
사후관리 판정	사후관리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착용 • 추적검사 • 치료 • 작업장소 변경 • 근무시간 단축 • 야간작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가, 휴직 치료 후 현재업무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무 전환

라. 직업병 관련 판정 기본원칙

-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구분 요소: 징후(Sign), 장애(Disorder), 질병(Disease)
- 징후 → 장애 → 질병

2) 업무적합성 평가

가. 근무 금지 내지 취업 제한을 요하는 건강 상태

-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 예방 조치를 한 경우 제외)
- 조현병·마비성 치매 질환자
- 심장·폐 등의 질환으로 근로에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환자

나. 사업주의 취업제한 및 금지 조치

- 사업주가 취업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개별 유해인자에 따라 질병의 정도 및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후 사업주가 취업 제한 및 금지 조치

다. 적정 배치

- 배치 전 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배치 및 업무 적합성 평가

라. 배치 적합성 평가

- 유해 요인 노출 전 과거병력, 가족력, 현 병력 등에 대해 문진

마.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 평가

- 현재의 노출 정도가 기존 질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판단
- 현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좋은지 여부 범주화

바. 업무수행 평가 시 고려 사항

- 개인의 건강 상태 및 노출 정도에 따라 아래 범주 중 하나로 판단
- '다'로 판정된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근로자로 작업 복귀
- '라'로 판정된 경우 작업 전환, 불이익 최소화, 해고 또는 휴직 금지 등 조치

3)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가.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 작업 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 조치
-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림

나. 건강진단실시 결과에 따른 조치

-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 검사, 근무 중 치료 등 조치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근로자가 원할 경우 다른 전문기관의 조치

다. 직장 복귀 원칙과 절차

- 법령에서 정한 금지 조건으로부터 회복이 확인되면 복귀 조치